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498
번 호	

제출년월일 : '96. 5.

제 안 자 : 안산시장

□ 폐지이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통상산업부령 제23호, '95. 8. 11 공포 시행)되면서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로 안산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의 존재사유 소멸.

□ 주요골자

- 안산시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전문폐지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23호) 제26조
- 참고자료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업무 처리 지침 - 경기도 상정 57121 - 1781호('95. 10. 31)공문

안산시에너지사용자동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안산시에너지사용자동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편 지역경제 제1장 지역경제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안산시조례 제397호]
1991. 3. 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1. 에너지관리대상자로서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2.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 제22조(제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 위반자
3.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

제3조(부과기준) ①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표 금액의 50%까지 경감 할 수 있고, 신고 지연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의 한도안에서 별표 금액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과태료 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고 1회 위반시에 한하여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제4조(부과징수) ①관계공무원(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에너지 사용자 등의 위법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 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

제5관 지역경제 제1장 지역경제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지, 납부) ①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금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내각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편 지역경제 제1장 지역경제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구 分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과 태 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에너지사용자(에너지관리대상자)	가.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에너지이용협회 화법 제10조 제1항	20	50	100
	나. 에너지관리자의 채용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때	동법 제13조 제2항	20	50	100
2. 임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입자	가. 제조업 또는 시공업의 일부 혹은 전부의 휴지, 폐지, 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동법 제22조 및 제 30조 제2항	20	50	100
	나. 형식 승인된 열사용기자재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때	동법 제31조 제1항	50	80	100
3.검사대상기기 설치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	동법 제30조 제3항	20	50	10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1 9 9 5 · 8 · 1 1] [통상산업부령제23호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한산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한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이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촉진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용도별 에너지수요의 적정성
3. 연료·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공급원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6. 폐열의 회수·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7. 대체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주체
3. 이행방법

第31編 에너지利用・鑄業 第2章 에너지利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관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보고등) ①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연도별 에너지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료의 무상제공)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료의 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열전구의 경우 20개
2. 형광등램프의 경우 10개
3.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경우 5개

제25조 (시·도지사등의 보고)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보고시기는 별표 3과 같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26조관련)

(단위 : 만원)

구 分	내 용	해 당 법조문	과 태 료			
			1 회 위반	2 회 위반	3 회 위반	4 회 위반
1.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가.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8조 제1항	50	100	200	300
	나. 에너지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9조 제1항	50	100	200	300
	다.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9조 제2항	50	100	200	300
	라. 에너지 사용계획 또는 요청받은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법 제10조	50	100	200	300
2.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가. 수요관리 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에너지공급자	법 제12조 제1항	50	100	200	300
3.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 사업주 관자 의의 자의 사용계획신고	가. 에너지 사용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11조 제1항	50	100	200	300

第31編 에너지利用 · 鎮業 第2章 에너지利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신고등 • 에너지관리 대상자의 지정등 • 에너지관리자의 선임 •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 • 검사대상기 기조종자의 선임 	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법 제19조 제2항	50	100	200	300	
	다. 에너지사용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법 제25조 제1항	20	50	100	300	
	라. 에너지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정에너지관리대상자	법 제28조 제2항	30	70	150	300	
	마. 제조업의 휴지·폐지·사업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제조업자	법 제45조	20	50	100	300	
	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법 제59조 제3항	30	70	150	300	
	4. 에너지 사용등의 기록	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법 제26조	20	50	100	300
5.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 등	가. 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법 제36조 제1항	1°C위반	60	120	180	
		제2항	2°C위반	70	140	210	
		제3항	3°C위반	80	160	240	
		제4항	4°C위반	90	180	270	
		제5항	5°C위반	100	200	300	

第31編 勞動利用・鑛業 第2章 勞動利用 勞動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6. 특정열 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등	가. 특정열 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록 및 배관 도면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 제2항	30	50	100	300
7. 자체검사등	가.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경우의 자체검사기록 및 검사대상기기의 운전·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7조 제1항 또는 제3항	20	50	100	300
8.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의무등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적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1항	20	50	100	300
	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견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가.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67조	300			
	나.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86조	300			
10. 교육	가.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시공업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로서 에너지관리자·시공업의 기술인력·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통상산업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88조 제2항	20	50	100	300

* 주) 이 표에서의 위반횟수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하되,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의 누계치로 한다.